

연세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미만	32,520	30,100	27,790	26,530	25,260	25,260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0,650	37,630	34,740	33,160	31,580	31,58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4,490	50,470	46,590	45,000	43,400	43,4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13시간 초과	80,060	74,170	68,520	66,930	65,350	54,780

○ 등급외 대상자에 대한 비용(원) (5등급, 시간별 비용의 80%)

구 분	공단 (급여비용)	80%	20일 기준 이용비용
급여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3,400	34,72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54,780	43,820

구 분	1회	1일	20일 기준 이용비용
비급여	식사 (1식/1일) ※ 이용시간에 따라 식사 횟수 달라짐.	4,500	4,500
	간식 (2식/1일)	1,200	2,400
	계	5,700	6,900

구 분	급여	비급여	계
계 (급여+비급여)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1식 2간식)	694,400	138,00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2식 2간식)	876,480	228,000
			1,104,480

주간보호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 비급여 수가

비급여 청구 항목	금 액	비 고
① 식사재료비	4,500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이,미용비(월)	0원	* 외부 이미용실 이용시 개인부담
③ 간식비	1,200원	* (1회) 기준으로 계산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제2조(이용자와 보호자(신원인수인)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이용자의 의무

-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 ⑥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4. 보호자(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③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④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인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